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53140 판결 [전세보증금 청구 독촉]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6. 8. 26.

판결 선고 2016. 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면책결정의 확정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0. 29.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또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3호증의 4, 22,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4. 7.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서산시 D, E 지상 가동 건물 바로 앞에 있던 피고 소유의 또 다른 건물인 위 지상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04. 7. 25.부터 2005.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 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4. 7. 16.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2. 3. 21. 위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② 원고는 2015. 5. 29. 피고를 상대로 원 ·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768호, 2013하면127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위 법원은 2014. 3. 24.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10. 10.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2014. 10. 13.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0. 29.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이전에 신청하였던 회생사건에서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②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당시 원고와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배당액을 두고 다투던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0. 13.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법률 제566조 단서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재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 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그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러한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4, 13, 22,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2, 11, 12, 18,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 ① 피고는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97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재하였다.
- ②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회생계획안이 2012. 8. 13.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자 위 법원은 2012. 8. 14.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 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원 ·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6. 8. 17.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② 하나은행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인 2012.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하나은행이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에이치케이'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 ③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등이 2013. 6. 4. 대금 772,100,000원에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선순위 임차인인 원고에게 2순위로 12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유에이치케이에게는 3순위로 642,191,785원(배당비율 45.99%)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④ 유에이치케이는 2013. 7. 17.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2013. 7. 23.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50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배당이의소송의 진행

- ① 위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원 ·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1,0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명목이 월차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②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3.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4. 2. 13. 위 배당이의 사건의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증금을 모두반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반환하지 않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고가 배당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유에이치케이의 배당이의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된 상태였다).

③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4. 10. 23. "매월 지급된 위금원은 차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4나14038호),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4)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의 진행

① 피고는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3. 12. 2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유에이케이의 잔존채권액을 기재하면서 유에이케이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잔존채권액으로 기재하였다.

③ 위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2014. 5. 14.자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갑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와 사건별수불내역서, 회생사건의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유에이치케이로부터 발급받은 2013. 9. 30.기준 부채증명원1)을 토대로 유에이치케이의 잔존채권액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임의 경매절차에서 유에이치케이가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금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면서 유에이치케이의 채권만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 ②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이전에 위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시 원고와 유에이치케이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미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의 임차권이 유에이케이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로 발생하였던 것인데다가, 실제로 피고가 유에이치케이 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달리 피고가 위 증인신문 당시 유에이치케이의 배당이의로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③ 또한, 위 증인신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로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던 금원의 성격과 관련한 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유에이 치케이의 배당이의로 원고가 배당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나,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금원의 성격이 왜 다투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원고가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배당금을 종국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증인이던 피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증언 이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 ④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와 사건별수불내역서2), 회생사건의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배당표(문서송부서 427쪽)에 기재된 공탁번호와 사건별수불내역서(문서송부서 429쪽)에 기재된출급금종류('집행공탁')를 보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탁되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다가, 회생사건의 기록에도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남아있을 수도 있음이 드러나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행동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이전의 회생사건에서는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담보권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부인한 것일 뿐, 원고의 회생채권 자체는 시인하였으므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⑥ 그리고,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잔존채권액이 원금만 이미 27억 원을 상회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전체 채무액의 5%에도 미치지 않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누락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1)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서송부서에는 편철되어 있다.

2)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서송부서에는 편철되어 있다.